

## 연합푸드뱅크 공동운영 협약서

### 전문

본 협약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나눔과 복지·교육 지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참여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, 연합푸드뱅크 사업의 공동운영, 국내 지부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본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사리사욕, 영리 목적,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, 이웃을 향한 순수한 봉사와 투명한 운영을 원칙으로 협력할 것을 사회와 이웃 앞에 약속하며 본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참여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기부식품, 생활용품, 교육 및 복지자원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, 연합푸드뱅크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명칭)

본 협력체의 명칭은 연합푸드뱅크 공동운영 컨소시엄이라 한다. 필요 시 대외 명칭으로 경인연합푸드뱅크 또는 연합푸드뱅크 전국나눔협력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.

### 제3조 (기본원칙)

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수혜자에 대한 무상나눔 원칙

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의 재판매·교환·사적 유용 금지

후원금 및 기부물품의 투명한 관리

정치적 중립

참여기관 간 상호존중과 협력

개인정보 보호

관계 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

국내외 협력기관의 독립성과 현지 법령 존중

### 제4조 (무상나눔 원칙)

① 참여기관 및 지역 협력기관은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식품, 생활용품, 교육 및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수혜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강제적인 금전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.

② 실비, 행정비, 배송비,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혜자에게 사실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③ 기부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판매, 교환,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④ 사업 운영상 부득이한 실비가 필요한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고, 그 내역을 기록한다.

### 제5조 (정치적 중립)

① 본 컨소시엄과 참여기관은 특정 정당, 후보자, 정치세력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본 사업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기부물품, 수혜자 명부, 행사장, 홍보물, 차량, 홈페이지, 온라인 계정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.

### 제6조 (공동운영위원회)

① 본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합푸드뱅크 공동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공동운영위원회는 각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책임자로 구성한다.

③ 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의결한다.

사업계획 및 운영방향

참여기관의 가입 및 탈퇴

국내 지부, 지역협력기관, 해외협력기관 운영

후원금 및 기부물품 관리

자원봉사자 모집, 교육, 배치 및 관리

재능기부자 및 기능기부자 협력

실비, 활동비, 인건비 지급 기준

위반사항 조사 및 조치

국내외 대외협력 및 업무협약

기타 공동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7조 (의결 방법)

① 공동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신규 참여기관의 승인

참여기관의 자격 제한 또는 협약 해지

지부 승인 또는 승인 취소

본 협약의 변경

중요한 재정 집행

해외 지부 또는 해외 협력거점 설치

③ 공동운영위원회는 가능한 한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한다.

제8조 (대표기관 및 주관기관)

① 본 컨소시엄의 초기 대표기관은 경인장애인선교회로 한다.

② 대표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여기관 간 연락, 회의 소집, 대외협력, 사업 조정, 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대표기관은 본 협약의 운영에 있어 참여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, 주요 사항은 공동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(긴급 임시조치)

① 대표기관 또는 감사는 무상나눔 원칙 위반, 기부물품 부정 사용, 정치적 이용, 회계 부정,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이 의심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임시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해당 사업 또는 지부 운영의 일시 정지

물품 공급의 일시 보류

관련 자료 제출 요구

수혜자 및 후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

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

③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, 사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 위반 의심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는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.

제10조 (감사 및 점검)

- ① 본 컨소시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감사는 후원금, 기부물품, 배분 장부, 회계자료, 지부 운영 상황, 자원봉사자 활동기록 등을 점검할 수 있다.
- ③ 참여기관 및 지부는 감사 또는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재정 및 회계)

- ① 본 컨소시엄 명의로 모금된 후원금과 지원금은 지정된 전용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참여기관의 고유 재정과 본 컨소시엄 사업 재정은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③ 모든 수입과 지출은 장부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투명하게 관리한다.
- ④ 인건비, 실비 또는 활동비는 관련 법령, 지원사업 기준, 후원금 사용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다.

제12조 (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)

- ① 본 컨소시엄은 자원봉사센터, 지방자치단체, 복지기관, 교회, 학교, 기업,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·관리할 수 있다.
- ② 물류, 운전, 행정, 상담, 교육, 홍보, 촬영, 디자인, 법률, 세무, 회계, 전산, AI 디지털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재능기부 또는 기능기부 협조를 받을 수 있다.
- ③ 자원봉사자, 재능기부자, 기능기부자 및 실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, 식비, 재료비,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, 재단 등에서 지원되는 인건비, 활동비, 사업비, 공모사업비, 일자리사업비 등은 지원 목적과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
제13조 (지부 및 지역협력기관)

- ① 본 컨소시엄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내 지부, 지역협력기관, 해외협력기관 또는 협력거점을 둘 수 있다.
- ② 국내 지부는 개척교회, 지역교회, 복지단체, 장애인단체, 사회복지 관련자, 교육기관,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지부 및 지역협력기관은 본 협약과 내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지부 및 지역협력기관의 승인, 운영, 점검,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14조 (국제협력 및 디지털 인프라)

- ① 본 컨소시엄은 장기적으로 국제적 푸드뱅크 및 교육·복지 나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해외 비영리기관, 교회, 복지기관, 교육기관, 국제구호단체, 기업, 개인 후원자와 협력할 수 있다.
- ② 구글 비영리 지원사업,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 지원사업 등 승인받은 디지털 인프라는 푸드뱅크 운영, 기부물품 관리, 자원봉사자 관리, 교육자료 제작, 홈페이지 운영, 국제협력, 온라인 회의, 원격교육, AI 디지털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.
- ③ 디지털 인프라는 본 컨소시엄의 비영리·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, 사적 이익, 영리 목적, 정치적 목적 또는 부당한 홍보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15조 (참여기관의 책임)

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.

- 본 협약 및 운영규정 준수
- 기부물품과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

수혜자, 후원자,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보호

정치적 중립 유지

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활동기록 관리

사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성실한 협의와 해결

제16조 (위반 시 조치)

① 참여기관 또는 지부가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시정 요구

경고

일정 기간 참여 제한

물품 공급 중단

지부 승인 취소

협약 해지

필요 시 관계기관 신고 또는 법적 조치

② 위반 조치 전 해당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. 다만 수혜자 보호나 기부물품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17조 (개인정보 보호)

참여기관은 수혜자, 후원자, 자원봉사자 등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본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8조 (대외협력)

본 컨소시엄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복지기관, 종교기관, 교육기관, 기업, 시민단체, 해외 협력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19조 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은 참여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0조 (협약의 변경)

본 협약의 변경은 공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정한다.

제21조 (협약의 해지)

참여기관은 서면 통보를 통해 본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, 후원금, 기부물품, 수혜자 지원, 개인정보, 회계자료와 관련된 책임은 성실히 정리하여야 한다.

제22조 (기타)

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, 내부 운영규정, 공동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.

협약 체결일

2026년 월 일

참여기관 서명란

기관명: 경인장애인선교회

대표자: 김재완

주소: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, 213호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사단법인예수교장로회경인교회

대표자: 김재완

주소: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, 213호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-----

대표자: -----

주소: -----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-----

대표자: -----

주소: -----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-----

대표자: -----

주소: -----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-----

대표자: -----

주소: -----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-----

대표자: -----

주소: -----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-----

대표자: -----

주소: -----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-----

대표자: -----

주소: -----

서명 또는 직인: -----

기관명: -----

대표자: -----

주소: -----

서명 또는 직인: -----